

社團 韓 國 科 學 技 術 團 體 總 聯 合 會
法 人

定 款

第 1 章 總 則

- 第 1 條 (名稱) 本聯合會는 社團法人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以上本會라稱함)라 稱한다.
- 第 2 條 (本會와 支部) 本會는 本部를 서울特別市에 두고 支部를 서울特別市, 釜山市 및 各道에 들 수 있다.
- 第 3 條 (目的) 本會는 國內科學技術團體의 有機的 結合으로 科學技術振興의 體系的인 計劃 및 實踐을 通하여 國家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 4 條 (事業) 本會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科學技術振興을 爲한 施策의 審議 및 建議,
 2. 國內外科學技術의 交流, 紹介弘報 및 出版,
 3. 國內外 科學技術團體間의 協同과 活動의 獎勵 및 調整,
 4. 科學技術會館의 運營,
 5. 科學技術振興을 爲한 諸般會合의 主催 및 周旋,
 6. 其他 本會 目的達成을 爲한 事業,

第 2 章 會 員

- 第 5 條 (會員의 種類) 本會 會員은 正會員, 特別會員 및 贊助會員으로 한다.
- 第 6 條 (正會員) 正會員은 本會 目的에 贊同하는 科學技術에 關한 學會 및 科學技術發展을 主要目的으로 하는 團體로서 한다.
- 第 7 條 (特別會員) 特別會員은 傘下團體를 가진 科學技術團體로서 한다.
- 第 8 條 (贊助會員) 贊助會員은 本會 目的에 贊同하는 其他團體로서 한다.
- 第 9 條 (會員加入) 會員의 加入은 理事會의 審査를 要한다.

第 3 章 機 關

- 第 10 條 (機關의 種類) 本會에 다음의 機關을 둔다.
1. 總 會
 2. 理 事 會
 3. 運營委員長會
 4. 運營委員會

第 4 章 任 員

- 第 11 條 (任員의 種類) 本會에 다음의 任員을 둔다
- | | |
|---------|-----|
| 會 長 | 1名 |
| 副 會 長 | 5名 |
| 理 事 長 | 1名 |
| 理 事 | 26名 |
| 運營委員長 | 1名 |
| 運 營 委 員 | 若干名 |

運 營 委 員 若 干 名
監 事 3 名
事 務 總 長 1 名

第 12 條 (任員의 選出) 會長, 副會長, 理事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하되 任員의 數는 各部門에 걸쳐 均衡되도록 選出함을 原則으로 한다.

理事長은 理事會(第17條)에서 選出한다.

運營委員會長은 運營委員長會(第18條)에서 選出하고 運營委員長은 當該部門 運營委員會(第19條)에서 選出한다.

運營委員은 理事長이 委屬하되 理事는 當然職 運營委員이 된다.

事務總長은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會長이 任命한다.

會長 및 副會長은 當然職理事가 된다.

第 13 條 (任員의 任務)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며 總會를 召集하여 그 議長이 된다.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이 有故時에는 會長이 指名한 副會長이 그 職務를 代理한다.

理事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運營委員會은 運營委員長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運營委員長은 部門別運營委員會를 召集하고 그 議長이 된다.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고 學術에 關한 會務를 審議決定한다.

運營委員은 部門別로 運營委員會를 構成하고 運營에 關한 會務를 審議決定한다.

監事는 本會의 金錢出納 決算報告 및 諸般會務를 監査한다.

事務總長은 第10條에 規定된 各機關의 決議事項을 執行한다.

第 14 條 (名譽 會長 및 顧問) 本會는 學識과 經驗이 豊富하고 德望이 높은 이로서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 名譽會長 및 顧問若干人을 會長이 추대할수 있다.

第 15 條 (任期) 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第 5 章 會 議

第 16 條 (總會)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의 2種으로 하며 正會員 및 特別會員인 團體를 代表하는 代議員으로서 構成한다.

正會員의 代議員數는 別表 基準에 依하여 理事會에서 決定한다.

特別會員의 代議員數는 2名으로 한다.

定期總會는 每年 1回 3月中에 開催하며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時 또는 代議員數의 5分之2 以上の 要求가 있을 時 이를 開催한다.

總會는 다음의 事項을 議決한다.

1. 事業計劃 및 豫算의 審議,
2. 事業報告 및 決算報告의 審議,
3. 任員 選出,
4. 定款의 制定 및 改正,

5. 其他 本會의 目的達成에 必要한 基本的 事項,

總會는 在籍正會員 團體數의 5分之2 以上の 出席으로 成會하고 代議員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所屬代議員 1人以前의 出席으로 그 團體는 出席한 것으로 看做한다

總會는 總會開催日 7日以前에 그 召集을 通告함을 原則으로 한다.

臨時總會에서는 召集通告時에 通告한 以外의 案件을 審議議決하지 못한다.

第 17 條 (理事會) 理事會는 在籍理事 2分之1 以上の 出席으로 成會하고 在席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理事會에는 部門別로 다음의 分科委員會를 둔다.

分科委員은 理事 및 德望있는 斯界權威者中에서 理事會가 委囑한다.

理事 및 正會員團體의 長은 當然職分科委員이 된다.

1. 理學部門 分科委員會,
2. 農水産部門 分科委員會,
3. 工學部門 分科委員會,
4. 保健部門 分科委員會,
5. 綜合科學技術部門 分科委員會,

第 18 條 (運營委員長會) 運營委員長會는 在籍構成員 3分之2 以上の 出席으로 成會하고 在籍構成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部門別分科委員會에는 專門分野別로 小分科委員會를 둘수 있다.

理事會는 部門別 分科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에 附議할 案件을 審議配分하며 部門別分科委員會의 決議內容이 相違될時 이를 調整한다.

運營委員長會는 部分別運營委員會의 決議內容이 相違될시 이를 調整한다.

第 19 條 (運營委員會) 運營委員會는 在籍構成員 2分之1 以上の 出席으로 成會하며 在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運營委員會는 다음 部門別로 한다.

1. 企劃委員會
2. 財政委員會
3. 管理委員會
4. 弘報委員會
5. 刊行委員會

第 20 條 (其他) 各級會議의 決議에 있어서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그 可否를 定한다.

第 6 章 財 政

第 21 條 (財源) 本會의 經費는 會員의 會費 贊助金 補助金 및 本會의 財産收入으로 充當한다.

第 22 條 (會費) 會費는 代議員數에 比例하여 總會에서 決定한다.

第 23 條 (停權) 會費를 滯納할 時는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여 會員資格을 停權할수 있다.

第 24 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日부터 翌年 三月末日까지로 한다.

第 7 章 附 則

第 25 條 (處務規程) 本會의 處務規程은 運營委員長會議에서 別途로 定한다.

第 26 條 (定款의 改正) 本會의 定款은 總會에서 出席代議員 3分之2 以上の 決議로 改正할 수 있다.

第 27 條 (解散) 本會를 解散하고자 할 時는 總會에서 出席代議員 3分之2 以上の 決議에 依한다

第 28 條 (財産處理) 本會가 解散하였을 時에는 任員이 清算人 이되고 監事가 清算監査人 이된다
殘餘財産이 있을 時에는 清算人會의 決議에 依하여 本會와 類似한 目的을 가진 團體에 이를 寄贈한다.

第 29 條 (施行) 本定款은 創立總會에서 通過한 날로부터 施行한다.